

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 안내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규정(대통령령 제18822호 : 2005.5.7 개정공포)에 의거 보증가능금액확인 제도가 재 시행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□ 발급대상 업종

-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사공업(제1종)

□ 시행일

- 신규등록자 : 2005년 6월 8일 건설업등록 신청분부터 적용함.
- 기존등록자 : 2005년 6월 7일 이전 건설업등록자는 2005년 12월 7일까지 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.

□ 발급신청서류

-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(조합서식)
- 예치서(조합서식)

□ 확인서 발급절차



• 신용평가신청서(조합서식)

- 신용조사서, 건설업등록수첩사본, 인감증명서(개인 및 법인)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완납증명서, 재무자료, 신용평가정보의 제공 · 활용동의서, 금융상황확인서, 임의자료 등

□ 예치(출자)금액

-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하여야 하며,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 예치(출자) 대상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보증가능금액(법정자본금 2억원)을 충족하기 위한 신용등급별 최소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신용등급별 예치금액

구 분	CCC등급 이상	CC등급	C등급
기준좌수	45좌	49좌	74좌
예치금액	40,860,000원	44,492,000원	67,192,000원
보증 가능 금액	2억원이상 (45좌 × 908,000 × 5.5배)	2억원이상 (49좌 × 908,000 × 4.5배)	2억원이상 (74좌 × 908,000 × 3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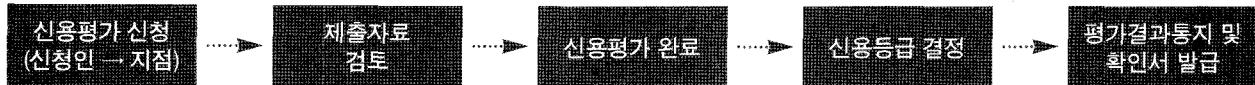
※ 현재 등급별 기준좌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은 이 제도 공포 후 6월 이내(2005년12월 7일)에 예치(출자)를 보완하여야 하며, 예치금액은 신용등급 및 지분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□ 신용평가 방법절차

- 신용평가는 “정규평가”와 “간이평가”가 있으며, 두 가지 중 해당되는 평가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평가종류		평가대상 구분
정규평가		• 최근 결산일 기준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인 조합원
간이평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결산일 기준 영업기간이 2년 미만인 조합원 • 정규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이평가를 희망하는 조합원 • 건설업 신규등록 및 가입을 원하는 비조합원

□ 신용평가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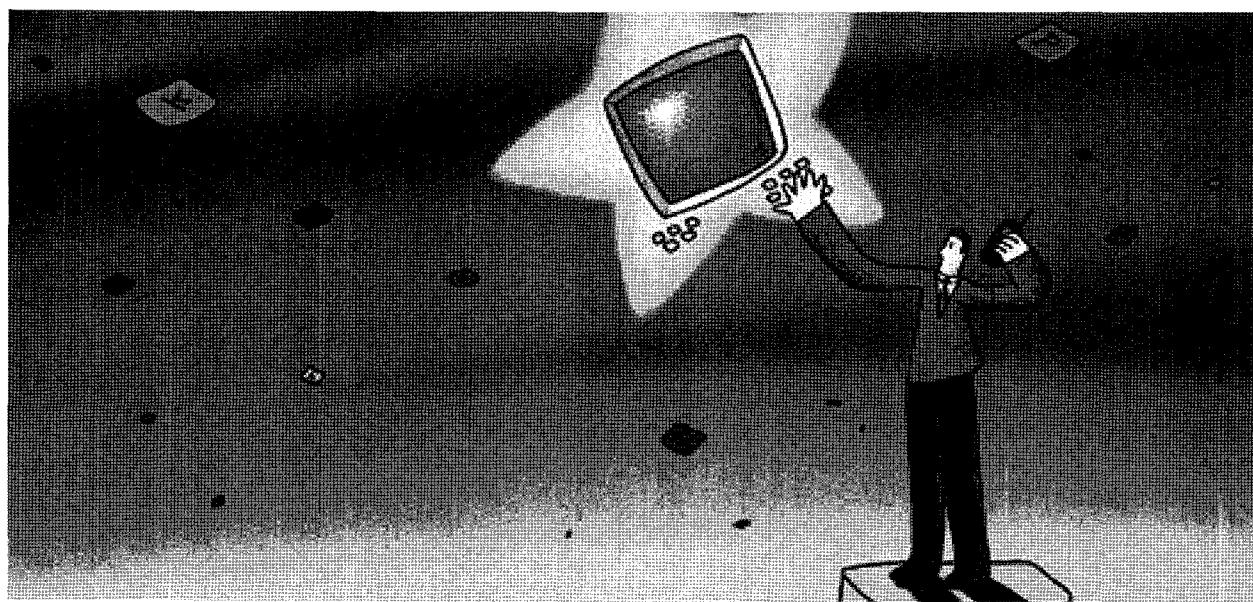
□ 신용평가 등급부여

- 정기평가 : 신용평가등급 결정기준에서 산출된 최종점수에 따라 AAA, AA, A, BBB, BB, B, CCC, CC, C등급의 9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.
- 간이평가 : 기준표의 재무항목과 일반항목에서 산출한 해당항목 점수를 각각 합산한 후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최종 등급 BB, B, CCC, CC, C등급을 부여합니다.

□ 조합업무 이용

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은 조합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조합이 정한 제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다음 업무거래(보증·용자 등)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보증기능금액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(www.seolbi.com)나 가까운 지점 및 영업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붙임 1

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

신청인	상호	설비건설(주)	대표자	홍길동
	영업소재지	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-00		
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1111-111111 (000-00-00000)	전화번호	02-000-0000
등록관청		000구청		
신청업종		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		

당사(본인)는 귀 조합 “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규칙”의 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,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-00
 상 호 : 설비건설(주)
 대 표 자 : 홍길동
 전화번호 : 02-000-0000

(인)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

붙임 2

예 치 서

(접수번호 :)

신청업종	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
예치금액	금사천사십구만일천팔백이십이원 (₩40,491,822)

당사(본인)는 건설산업기본법, 동법시행령과 조합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하에 상기금액(현금 또는 자기앞수표)을 귀 조합에 예치(출자)합니다.

다 음

- 당사의 귀책사유로 이 예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,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되어도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예치(출자)금액은 당사의 신청업종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환불신청 하되, 손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청구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- 당사가 신청업종에 대한 등록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 또는 등록처분통지서를 교부 받아 귀 조합에 제시하고, 조합 가입절차에 따라 귀 조합에 가입한다.
- 예치(출자)후 조합가입시 좌당지분액과 예치(출자)시 좌당금액의 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 받기로 한다.
- 전항에 의한 추가납부의 경우, 그 차액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조합정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조합가입불허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한다.
- 예치(출자) 후 주소, 상호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귀 조합에 신고한다.
- 기타 예치(출자)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귀 조합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-00

상 호 : 설비건설(주)

대 표 자 : 홍길동

전화번호 : 02-000-0000



※구비서류 : 1. 법인등기부등본 1부.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3. 인감증명서 1부.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